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1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 박정현·이해식·김남근

진선미 • 김한규 • 고민정

염태영 · 채현일 · 박지원

박민규 • 박해철 • 서미화

이재관 · 허성무 · 김 윤

문진석 · 김동아 · 이기헌

이용선 · 정일영 · 이수진

강준현 · 최민희 · 김영환

이광희 · 양부남 · 이학영

박희승 의원(28인)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 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 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제폭력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 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 터 제13조까지).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제관계"란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하는 등 관계의 성격, 지속기간 등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애정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2. "교제폭력행위"란 교제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 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

- 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 및 제264조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1항, 제 273조제1항 및 제275조제1항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제1항, 제 277조제1항, 제278조부터 제280조까지 및 제281조제1항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 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 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8 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305조의3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최 중 제323조, 제324조,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4까지, 제324조의5(제324조의 외에만 해당한다), 제325조, 제326조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 제368조 및 제3 69조제1항의 죄
- 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15조의2의 죄
- 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의 죄
-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 "교제폭력행위자"란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범죄의 공범을 말한다.
- 5. "피해자"란 교제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6. "피해자등"이란 제5호에서 정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교제폭력행위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가. 피해자의 「민법」상 가족이거나 가족이었던 사람 나.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제폭력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4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교제폭력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교제폭력행위의 제지 및 교제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 처벌 서면 경고
 - 2.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등의 신변안전조치 절차 안내
-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5. 교제폭력행위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 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6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교제 폭력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 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 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 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피해자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제폭력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 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 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 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 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 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 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리에

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피해자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 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1. 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와 동일한 피해자등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6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와 동일한 피해자등에 대한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제10조(잠정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교제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 1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 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한다.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의 주거시설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부터의 퇴거
- 4. 피해자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 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6.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8.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4조에 따라 항고할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2.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 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⑦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 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 제13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교제폭력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 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
 -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 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피해자등 및 교제폭력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1.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2. 교제폭력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3. 제11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제14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4조(항고) ① 검사, 교제폭력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 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 제15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4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 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16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19조(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 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리를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리에게 교제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제21조(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 4. 교제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 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 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

- 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3장 벌칙

- 제23조(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 1항·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3호가목, 라목, 사목 및 파목의 교제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 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② 법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제폭력 행동의 진단 · 상담
-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 개월 이내
-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 ②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판사가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